
**한동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2023. 10

한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2023-동계 / 2024-1학기)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기업(관)에서 최저임금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직무체험형 / 채용연계형**)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하시는 기업(관)에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목 적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실무능력 배양,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의 산학협력 강화
- 목표한 직무가 본인의 적성과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한 사전 직무 배양
-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취업 경쟁력 고취 및 취업률 제고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기간, 실습가능기간

학기	모집기간		실습기간
	기업(기관)	학생	
2023-동계 계절학기	2023.10.04.(수)	2023.10.23.(월)	23.12.18.(월) ~ 24.02.16.(금) (최소 5주 ~ 최대 9주)
2024-1학기	2023.11.24.(금)	2023.11.24.(금)	24.03.04.(월) ~ 24.06.21.(금) (최소 14주 ~ 최대 16주)

※ 2023-동계, 2024-1학기 현장실습학기제는 2024년도 최저임금(9,860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4.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기관) 요건

- 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
- 다.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설비·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
- 라.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 마.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
- 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

5. 현장실습학기제 제외 기업(기관)

- 가. 직계존속 경영기업(기관),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외근 영업직 제외하고는 가능) 등
- 나.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실습이 불가능한 근로자 파견업체 또는 근로자 공급업체 등
- 다.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라. 노사분규,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마.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 서빙 등 단순노무직종
- 바. 야간(22:00~06:00) 근무 직종
- 사.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기관) 및 직종

6.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자격

- 가. 2학년 수료 이상자
(다만, 졸업예정학기 해당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나.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및 취소

- 가. 자격증 대여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나. 현장점검 시 약정된 실습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이 불가하다. 단순 노무업무 또는 기타 실습내용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8. 기업(기관) 지원 요청 사항

- 가. 실습생의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
- 나.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부과 불가
- 다.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실습시간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도록 운영(주 40시간 기준 약 4시간)
- 라. 실습지원비(최저임금이상) 지급 요청
- 마. 현장실습 사업장 내 안전교육 필수 및 실습기간 중 근태관리 철저
※ 실습 1일차에 사업장(기관)별 학생 실습 안전교육 지도 협조 요청
- 바.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에게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제공
- 사. 참여기업(기관)은 실습생의 재해시 재해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에 대한 특례)에 따라, 실습생이 실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가입, 1주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
- 아. 재택실습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요망 - 운영규정 제27조(재택실습)
- 자.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차. 연장실습은 학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

9.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신청 방법(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사용 절차)

가. 신청 방법

- 1) 한동대학교 진로개발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https://totalcareer.handong.edu>)
-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 3) 파견요청 방법

실습기관 참여 -> 현장실습 참여기관 신청공고 -> 신청
(정해진 기간에 신청. 학생과 면접 또는 협의 후 실습기간은 변경 가능합니다)

- 4)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업로드
- 5) 기타 안내사항 : 필요하신 경우 학생 면접도 가능하며,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외에 다른 자료
(ex,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경우 학생과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기업용] 현장실습 참여기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10. 현장실습 종료 후 평가(※ 현장실습 평가 매뉴얼 : 실습종료 전 안내 예정)

구분	평가	내용
기업(기관) 관리자	① 현장실습생 출근부	- 출근부 체크 및 확인
	② 현장실습생 평가서	- 현장실습 참여 학생 평가
	③ 설문조사	- 기업 설문조사 작성

11.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

- 최다경 054-260-3418, love1785@handong.edu
- 김유미 054-260-3321, yoomi92@handong.edu
- FAX : 054-260-1890
- 주소 : 우)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558 한동대학교
산학협력관 104호 현장실습지원센터

12. 운영 절차 [실습기업 담당자 참고용]

1단계	참여희망 기업(기관) 신청	2023.10.04.~11.24
	진로개발시스템-[현장실습]-[실습기관 참여] 작성(온라인 신청 매뉴얼) ※ 홈페이지 주소 : https://totalcareer.handong.edu ※ 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후 업로드	
2단계	참여희망 학생 신청	2023.10.23.~11.24
3단계	실습생 선발 : 면접 등을 통하여 실습생 선발	2023.11.20.~12.02
	- 기업, 학생, 대학 : 담당업무 및 실시 일정 등 협의 - 진로개발시스템-[현장실습]-[실습생 선발관리]-[실습참여관리]에서 기업실습담당자가 실습생 선발(학생선발 매뉴얼 안내 예정)	
4단계	현장실습 협약 체결	실습 첫째날
	- 기업(기관) · 학생 · 대학이 3자 협약 체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추후 안내 예정) 작성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회신	
5단계	현장실습 수행(동계, 2024-1학기)	2023.12.18(월)~2024.02.16(금) 2024.03.04(월)~2024.06.21(금)
	기업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6단계	현장점검, 유선 또는 서면 지도	현장실습 진행 기간 중
	대학(소속학부교수, 산학교수 및 관련 부서 직원) → 기업(기관) : 학생점검 및 담당자 면담	
7단계	종료 및 실습결과 평가	실습종료일 이내
	- 실습생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 작성(학생평가 매뉴얼 안내 예정) - 진로개발시스템-[현장실습]-[보고서 조회]-[실습생 보고 목록]에서 [출근부], [평가서] 작성 및 확인 - 진로개발시스템-[현장실습]-[실습기관참여]-[설문] 작성 및 확인	